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최 정 민 (Jeong Min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3.2 정보공개심의회 |
| 1.1 연구의 목적 | 4. 분석결과 |
| 1.2 연구방법과 범위 | 4.1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정보공개심의회 |
| 2. 선행연구분석 | 4.2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
| 3.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 | 5. 결론 |
| 3.1 행정정보공개제도 | |

<초 록>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정보공개심의회, 행정정보공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위원회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DDCs) i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This study found that first, the IDDC of the local agency had a more desirable meeting format and committee composition than that of the central agency. However, there were less differences in the IDCC rulings between the two agencies. Second, the IDDCs of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e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ir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strongly influenced the IDDCs meeting format and rulings i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t rarely influenced the IDDCs of the loc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DDC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ith these finding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IDDCs of the two agencies need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Keywords: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Government, Lee Myung Bak Government, Government Committees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mingg11@gmail.com)

■ 접수일: 2014년 7월 18일 ■ 최초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83-103,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3.08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중앙기관이 아닌 지방기관에서 비롯되었다. 1991년 11월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었다. 1998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다.

중앙기관이 정책결정 등 민감한 정보 또는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유관리하는 등 비공개대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지방기관에서의 정보공개율이 중앙기관보다 더 높다.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기관의 정보공개율은 86%(11년 81%), 지방기관은 97%(11년 93%)로 중앙기관이 지방기관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인다(안전행정부, 2012, p. 24). 이렇듯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중앙기관이 아닌 지방기관에서 비롯되었고, 공개율에 있어서도 지방기관이 앞서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중앙기관에서 먼저 시작되어 지방기관으로 확산되는 데 비해 정보공개제도는 지방기관에서 시작돼서 여타 공공기관으로 진행되었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보공개관련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가운데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 중에서도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훨씬 많다(최정민, 김유승, 2013, p. 179). 한 기관에 대한 연구가 주된 이유는 연구방법상의 한계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내용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정보공개제도일지라도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이 실제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면 각 기관에 보다 정확한 제도 운영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 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심의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미 부분공개나 비공개 등 공개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 사안에 따라 개척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심의회 결정은 바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그 사유와 결정이 청구인에게 타당할 경우 수긍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비용, 시간이 많이 드는 불복절차의 전 단계로서의 심의회는 정보공개제도 가운데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심의회 관련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상에서 살펴본 제도적 요인(회의형태), 인적 요인(위원구성)이 중앙, 지방기관의 심의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요인들이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정권 교체)이 중앙,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요인은 충분한 회의 시간이 주어지고 민간위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의 회의운영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전영평, 장임숙, 2005; 정홍익, 김호섭, 1991).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회의형태를 보고자하며, 회의형태는 내·외부 심의위원이 면대면으로 직접 모여 심의하는 '대면회의'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주고받는 '서면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인적 요인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선정방법은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다(Rosen, 1993; 안성민, 2000, p. 3). 즉,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위원을 선정했는지 등을 말한다.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인적 요인으로 심의회 위원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이 더 많은지, 아니면 기관 내부인사로 구성된 내부위원이 더 많을지를 볼 것이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는 위원회 제도를 둘러싼 상황적 환경, 즉 정부의 조직적 특성, 문화적·정치적 환경, 그리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토론문화 등이 있다(안성민, 2000, p. 5).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기 추구하는 정책 이념과 우선순위가 달라 경제, 복지, 통일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비교연구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 투명성 분배를 중요 가치로 하는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성장, 효율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정권 교체를 환경적 요인으로 삼는다.

정부위원회 연구는 중앙기관의 위원회나 지방기관의 위원회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

안 혹은 단일 위원회 사례를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동일한 위원회 제도가 중앙기관, 지방기관 간에 어떻게 달리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위원회 분석의 요인으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념과 정책노선에 큰 차이를 보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부의 교체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치적 환경이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위원회 연구 가운데 설문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위원회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동일한 위원회의 중앙, 지방 간 비교 사례도 없을뿐더러,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동일한 제도운영 비교연구의 앞선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운영의 공통된 혹은 각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연구시점은 2004년부터 2011년 6월 까지며 연구대상은 28개 중앙기관과 16개 지방기관이다. 이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현황과 심의회 위원구성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go.kr/>)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15부 2처 4개 위원회와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그리고 경찰청, 국세청, 대검찰청, 산림청 등 28개 중앙기관에 2010년 12월 9일-10일, 2011년 5월 30일-6월 13일의

〈표 1〉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수와 위원구성

중앙기관	심의회 개최수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총수	지방기관	심의회 개최수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총수
감사원	45	4	3	7	강원도	16	2	5	7
경찰청	17(-08')	6	1	7	경기도	17	4	3	7
고용노동부	21	4	3	7	경상남도	24	3	4	7
공정거래위원회	39	3	4	7	경상북도	4	4	3	7
교육과학기술	23	4	3	7	광주광역시	13	2	5	7
국가보훈처	36	5	4	9	대구광역시	15	3	4	7
국무총리실	5	3	2	5	대전광역시	17	3	4	7
국민권익위원회	41	4	3	7	부산광역시	20	4	3	7
국방부	18	5	2	7	서울특별시	27	3	4	7
국세청	62	5	6	11	울산광역시	16	4	3	7
국토해양부	68	4	3	7	인천광역시	28	4	3	7
금융위원회	20	3	2	5	전라남도	8	3	4	7
기획재정부	35	4	3	7	전라북도	17	3	4	7
농림수산식품	10	4	4	8	제주	57	3	4	7
대검찰청	중결	-	-		충청남도	17	4	3	7
대통령실	11	4	3	7	충청북도	15	2	3	5
문화체육관광	48	3	4	7	총수	311			
방송통신위원회	27	4	3	7					
법무부	198	7	2	9					
법제처	12	4	3	7					
보건복지부	35	4	3	7					
산림청	59	4	3	7					
여성가족부	17	3	2	5					
외교통상부	33	3	2	5					
지식경제부	14	4	3	7					
통일부	16	5	2	7					
행정안전부	62	3	2	5					
환경부	29	4	3	7					
총수	1,001								

두 차례에 걸쳐 심의회 개최 현황과 심의회 내부, 외부 위원구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와 9개 도를 포함한 16개 지방기관 역시 심의회 개최 현황과 심의회 위원 관련 사항을 2011년 6월 12일-27일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28개 중앙기관

가운데 ‘중결처리’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대검찰청을 제외한 27개 중앙기관의 1,001건, 16개 지방기관의 311건을 합하여 총 1,312건의 심의회 개최 현황 데이터와 심의회위원구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기관이 2004년부터의 심의회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부터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2007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되어, 지식경제부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 공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2004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하지 않고 각각 2005년 자료부터 공개하였다. 경찰청은 2009년 이후 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생산,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정보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기관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도는 2004-2005년도 정보공개 개최현황 보유자료가 없어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2004년 이후의 개최현황자료를 공개하였다.

공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개최수와 심의회 내부, 외부위원 구성인원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전체 위원 수는 7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국세청 11인, 국가보훈처와 법무부 9인,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충청북도는 5인이다. 대부분의 중앙 기관은 위원장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더 많다. 중앙기관 중 외부위원이 더 많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3개 기관뿐이다. 그러나 지방기관의 경우는 중앙기관과 오히려 반대로 외부위원이 더 많이 참여한 기관이 많았다. 16개 기관 중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충청북도 등 10개 기관이 전체 위원 중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더 많았다.

연도별 위원구성은 수의 변동은 있으나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아진다거나 내부위

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지는 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한편 중앙기관은 위원장이 모두 기관 소속의 내부인사였으나, 지방기관 중 광주, 대구, 대전, 제주는 외부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선행연구분석

정보공개제도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보공개 운영과 효과에 관한 연구(이승중, 1995; 성도경, 박의상, 2001; 박종관, 윤주명, 2004; 박돌봉, 2005; 김승태, 2006; 정광호, 전대성, 김홍석, 2008; 우정수, 2008)와 기관요인과 정보공개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용정, 1999; 장지원, 문신용, 2004; 안병철, 2009; 이명진, 문명재, 2010), 관료의 공개태도 관련 요인 혹은 관료와 주민 사이의 공개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진희, 이준기, 2010; 이재완, 2013; 최정민, 2013),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 관련한 연구(조영삼, 2009; 이보람, 이영학, 2013)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 관련한 거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공개제도 내의 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회 연구와 같은 미시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하다. 심의회는 관료가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안 등 정보공개제도 내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이다. 이제는 정보공개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제도 내 중요 부분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때이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심의회 분석에 들

어거기에 앞서 정부위원회 관련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위원회 관련 연구는 위원회와 시민참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부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위원의 인적 구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우선 정부위원회의 효과와 시민참여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연구마다 위원회와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Lynn & Busenberg(1995)는 시민 자문위원회는 정책마다 영향력이 다르다고 하였고, Schneider(1987)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경제적 자원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참여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박성민, 김철, 권성욱(2003)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위원회가 대부분 유명무실하였지만, 관악구 교통불편민원협의회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회는 경우에는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정책결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김철(2003)은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위원회 정비의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으며 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홍익, 김호섭(1991)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형식적인 회의운영을 언급하였다. 김호섭(2004)은 국정과제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권한, 책임, 역할관계가 불분명하여 부처 및 위원회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정해, 조성한(2007)은 정부위원회의 과도한 남용과 국정혼선, 식물위원회와 형식적인 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전영평, 장임숙(2005)은 대

구지역 지방정부위원회의 문제점을 제도, 운영,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원회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자들은 위원회 관련한 문제점을 각각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동일한 문제점으로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들(정홍익, 김호섭, 1991; 김호섭, 2004; 김정해, 조성한, 2007; 전영평, 장임숙, 2005)이 제시한 공통적인 위원회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의 합리화,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니는 위원회 구성, 회의록 공개 등 회의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다.

위원회 연구 중 위원구성에 더 초점을 둔 연구들을 보면, Karty(2005)는 균형적인 인적 구성이 위원회의 결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성민(2000)은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오히려 의결·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부문이 70% 이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최무현, 조창현(2008)의 연구에서 공무원들은 위원의 전문성이 위원회 결정의 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를 선호하였다.

위원회 개선방안으로 위원회 구성 외에 회의운영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조선일(2004), 김주환, 성지은(2005)은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전문성, 대표성 외에 추가적으로 단체장으로부터의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제시하였고 회의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위원의 회의 참석률

높이기, 지나친 서면회의 지양, 서면심의 대상 안건 사전지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정부위원회에 관한 초반 연구에서 위원회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로 제도적 요인, 인적 요인이 제시되었다. 또한 거의 연구된 바는 없지만 제도적 요인, 인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이 위원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홍익, 김호섭, 1991, p. 439)으로 언급되었다.

3.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

3.1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소극적 의미의 정보공개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넓은 의미까지 포함한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국민 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Mehra, 1986).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승태, 2005).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부분공개와 비공개와 같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청구인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간 결정을 내렸다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3.2 정보공개심의회

정부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정부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표를 통해서 정부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권한범위에 따라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가 있다(박석희, 정진우, 2004, p. 166).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위원회 유형 가운데 심의위원회에 속하며, 해당 위원회는 정책의 최종결정에 앞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정,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내·외부위원이 일반적이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논의하는 심의회이며, 그 결과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 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내부 공무원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와 담당 공무원이 이미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등의 공개결정을 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한 것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회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비와 관료의 위원회 참석으로 인한 본연의 업무에 불충실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전문성을 더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

석시켜 책임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Beniners & Swank, 2004; Seidman, 1998, pp. 19-20; 김철, 2003, p. 333; 박동서, 1996).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내부위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이 있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계층제적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2004년 7월, 2013년 8월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을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재판과 수사 관련된 업무 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비용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013년 개정 이전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였으나 개정 이후 최소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바뀌었다. 심의회는 위원장 역시 위원과 같이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여부의 최종결정에 앞서 내부,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조정,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심의회의 결정은 바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그 사유와 결정이 청구인에게 타당할 경우 수긍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제도 운영과 효과성, 혹은 기관 특성에 따른 공개 차이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불복과정으로서의 이의신청 이후 공개여부 등을 심의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가운데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심의회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4. 분석결과

4.1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정보공개심의회

4.1.1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결과

〈표 2〉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형태를 보면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서면회의 개최가 많고,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대면회의 위주로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기관의 경우 서면회의가 76.5%, 대면회의가 23.5%로 서면회의가 3배 이상 더 많이 열렸다. 이에 비해 지방기관

은 중앙기관과 반대로 대면회의가 68.5%, 서면회의가 31.5%로 거의 2배 이상 대면회의가 더 많이 열려 중앙과 지방 간의 회의 운영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의회 위원구성의 경우 위의 〈표 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앙기관은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3기관뿐이다. 그러나 지방의 정보공개심의회는 16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중앙기관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위촉할 수 있는 국방, 통일, 외교 업무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표 3〉과 같이 중앙기관은 대부분 내부위원이 많이 구성된 심의회(96.5%)가 개최되었으나, 지방기관은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되어 개최된 심의회가 67.2%로 중앙기관의 3.5%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표 2〉, 〈표 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회의 형태와 외부위원 구성 등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 비해 〈표 4〉에 따르면 심의회 결과는 회의형

〈표 2〉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

			회의형태		전체
			서면회의	대면회의	
기관 수준	중앙기관	빈도	734	226	960
		%	76.5%	23.5%	100.0%
	지방기관	빈도	98	213	311
		%	31.5%	68.5%	100.0%
전체		빈도	832	439	1271
		%	65.5%	34.5%	100.0%

$\chi^2 = 209.890, df = 1, p = .000$

〈표 3〉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위원구성

			심의회 위원 구성		전체
			내부위원 더 많음	외부위원 더 많음	
기관 수준	중앙기관	빈도	966	35	1001
		%	96.5%	3.5%	100.0%
	지방기관	빈도	102	209	311
		%	32.8%	67.2%	100.0%
전체		빈도	1068	244	1312
		%	81.4%	18.6%	100.0%

$\chi^2 = 636.105, df = 1, p = .000$

〈표 4〉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회 결과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기관 수준	중앙 기관	빈도	223	679	84	986
		%	22.6%	68.9%	8.5%	100.0%
	지방 기관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전체		빈도	315	876	106	1297
		%	24.3%	67.5%	8.2%	100.0%

$\chi^2 = 6.394, df = 2, p = .041$

태와 위원구성의 경우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심의회 결과 중 '기타'는 심사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에 대한 각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내부회의, 공란 등을 포함한다. 중앙과 지방기관 심의회의 공개율은 각각 22.6%, 29.6%, 비공개율은 68.9, 63.3%를 보여 지방기관의 비공개율이 더 낮기는 하나 유사한 심의회 결과를 보였다. 지방기관 심의회의 경우, 직접 모여서 하는 대면회의 개최가 많고, 외부위원을 많이 구성하여 심의회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바람직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의회 결과 면에서는 운영에 비해 중앙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지방기관이 최초의 정보공개에서 공개율이 높아 심의회를 통해 비공개에서 공개로 돌아설 사안이 적을 수 있다. 2012년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1년 사이 내내 지방정부의 전부 공개율은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개율은 해당기간 동안 80%에서 점차 줄어 2011년에는 65%까지 떨어졌다(안전행정부, 2012, pp. 126-130).

4.1.2 중앙·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 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형태에 따른 중앙기

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결과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기관 모두 서면회의가 대면회의보다 비공개율이 높았다. 그러나 중앙기관은 회의형태에 따른 심의회 결과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지방기관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기관은 서면회의가 총 734건, 직접 모여 이루어진 대면회의가 총 211건이다. 서면회의에서 공개/부분공개가 18.4%, 비공개 76.6%였으나 대면회의에서는 공개/부분공개 34.1%, 비공개는 45%로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공개율이 높고, 비공개율이 훨씬 낮았다. 반면 지방기관의 경우, 서면회의에서 비공개율은 66.3%, 대면회의에서 비공개율은 62.0%로 중앙기관의 결과만큼 회의형태에 따른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6>에서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심의회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보면, 중앙기관은 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

었다. 그러나 지방기관의 경우는 기관 내의 인사인 내부위원이 더 많은 심의회보다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가 공개율(34%)이 더 높고, 비공개율(59.3%) 더 낮았다.

4.2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이상에서 중앙기관,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따라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등이 달리 진행되는지 그리고 심의회 결과는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였다.

4.2.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결과

<표 7>에서 따르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심의회 회의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

<표 5> 중앙·지방기관 간 심의회 회의형태에 따른 심의회 결과

기관 수준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각하등	
중앙 기관	회의 형태	서면 회의	빈도	135	562	37	734
			%	18.4%	76.6%	5.0%	100.0%
	대면 회의	빈도	72	95	44	211	
		%	34.1%	45.0%	20.9%	100.0%	
	전체		빈도	207	657	81	945
			%	21.9%	69.5%	8.6%	100.0%
지방 기관	회의 형태	서면 회의	빈도	23	65	10	98
			%	23.5%	66.3%	10.2%	100.0%
	대면 회의	빈도	69	132	12	213	
		%	32.4%	62.0%	5.6%	100.0%	
	전체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중앙기관: $\chi^2 = 89.774$, $df = 2$, $p = .000$, 지방기관: $\chi^2 = 3.990$, $df = 2$, $p = .136$

〈표 6〉 중앙·지방기관 간 심의회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

기관 수준			심의회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각하 등		
중앙 기관	위원 구성	내부위원 더 많음	빈도	215	655	81	951
			%	22.6%	68.9%	8.5%	100.0%
		외부위원 더 많음	빈도	8	24	3	35
			%	22.9%	68.6%	8.6%	100.0%
	전체		빈도	223	679	84	986
			%	22.6%	68.9%	8.5%	100.0%
지방 기관	위원 구성	내부위원 더 많음	빈도	21	73	8	102
			%	20.6%	71.6%	7.8%	100.0%
		외부위원 더 많음	빈도	71	124	14	209
			%	34.0%	59.3%	6.7%	100.0%
	전체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100.0%

중앙기관: $\chi^2=0.001$, $df=2$, $p=.999$, 지방기관: $\chi^2=5.898$, $df=2$, $p=.052$

〈표 7〉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회의형태

			회의형태		전체
			서면회의	대면회의	
정부	참여정부	빈도	199	255	454
		%	43.8%	56.2%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633	184	817
		%	77.5%	22.5%	100.0%
전체		빈도	832	439	1271
		%	65.5%	34.5%	100.0%

$\chi^2=146.117$, $df=1$, $p=.000$

여정부의 심의회 회의형태는 서면 대 대면회의의 비율이 43.8% 대 56.2%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서면 대 대면의 비율이 77.5% 대 22.5%로 대면회의의 개최비율이 확연히 줄고 서면회의의 비율이 늘었다.

각 기관의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심의회 위원 구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공개법에 내부, 외부 심의회위원에 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원 총수가

변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부위원, 외부위원의 구성비가 변한 기관은 거의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 한 기관만 2008년에 내부 4인, 외부 3인에서 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외부위원이 더 많아졌다. 〈표 8〉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심의회 위원 구성의 수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원이 더 많은 심의회와 외부위원이 더 많은 심의회를 개최수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외부위원이 더 많

〈표 8〉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위원구성

			심의위원 구성		전체
			내부위원 더 많음	외부위원 더 많음	
정부	참여정부	빈도	376	96	472
		%	79.7%	20.3%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692	148	840
		%	82.4%	17.6%	100.0%
전체		빈도	1068	244	1312
		%	81.4%	18.6%	100.0%

$\chi^2 = 1.477, df = 1, p = .224$

이 구성된 심의회 개최율이 20.3%에서 17.6%로 줄어들었다.

〈표 9〉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에서 58.1%이던 비공개율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72.7%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는 심의회 회의형태, 심의회 결과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서면회의가 많이 늘었으며, 심의회 결과에 있어서도 비공개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2.2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별 심의회 회의형태, 심의회 결과

위에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에 따른

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 결과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한 바가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정권별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만을 보았다. 〈표 10〉을 보면, 중앙기관의 심의회 회의형태는 참여정부 때 서면회의 대 대면회의의 비율이 53.8% 대 46.2%인데 비해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88.5% 대 11.5%로 서면회의는 늘고 대면회의는 크게 줄었다. 지방기관 역시 참여정부의 서면 대 대면회의의 비율이 16.5% 대 83.5%에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41.1% 대 58.9%로 서면회의는 늘고 대면회의의 개최비율이 줄었다.

〈그림 1〉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회의형

〈표 9〉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심의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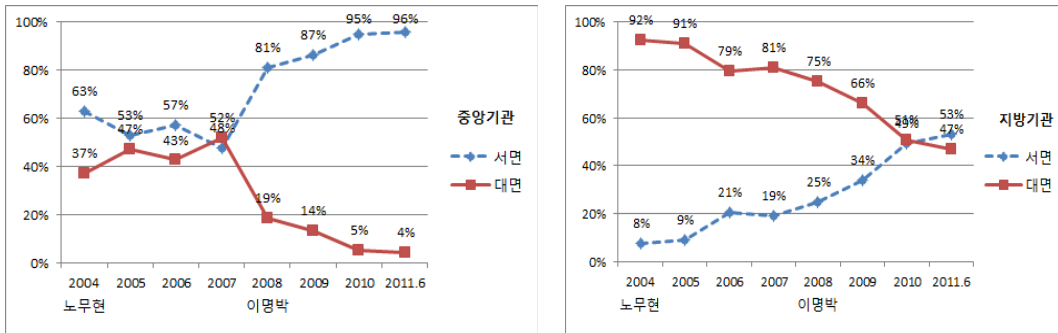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정부	참여정부	빈도	126	268	67	461
		%	27.3%	58.1%	14.5%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189	608	39	836
		%	22.6%	72.7%	4.7%	100.0%
전체		빈도	315	876	106	1297
		%	24.3%	67.5%	8.2%	100.0%

$\chi^2 = 47.508, df = 2, p = .000$

〈표 10〉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심의회 회의형태

			회의형태		전체
			서면회의	대면회의	
중앙 기관	참여 정부	빈도	179	154	333
		%	53.8%	46.2%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555	72	627
		%	88.5%	11.5%	100.0%
전체		빈도	734	226	960
		%	76.5%	23.5%	100.0%
지방 기관	참여 정부	빈도	20	101	121
		%	16.5%	83.5%	100.0%
	이명박 정부	빈도	78	112	190
		%	41.1%	58.9%	100.0%
전체		빈도	98	213	311
		%	31.5%	68.5%	100.0%

중앙기관: $\chi^2 = 146.020$, $df = 1$, $p = .000$, 지방기관: $\chi^2 = 20.600$, $df = 1$, $p = .000$



〈그림 1〉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연도별 심의회 회의형태

태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연도별로 자세히 보여 준다. 중앙기관의 경우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비슷한 추세로 오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서면회의와 대면회의의 비율이 눈에 띄게 큰 차이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앙기관의 심의회 회의형태에 숙의와 참여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은 중앙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큰 흐름은 중앙기관과 유사하게 대면회의가 줄고 서면회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6년 즈음에는 그 추세가 잠시 주춤하였다. 서면심의의 관행화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조장하고, 위원들이 무성의하게 대응할 소지를 높이며, 심의결과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조선일, 2004, p. 150). 따라서 서면회의 비중의 증가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권별 심의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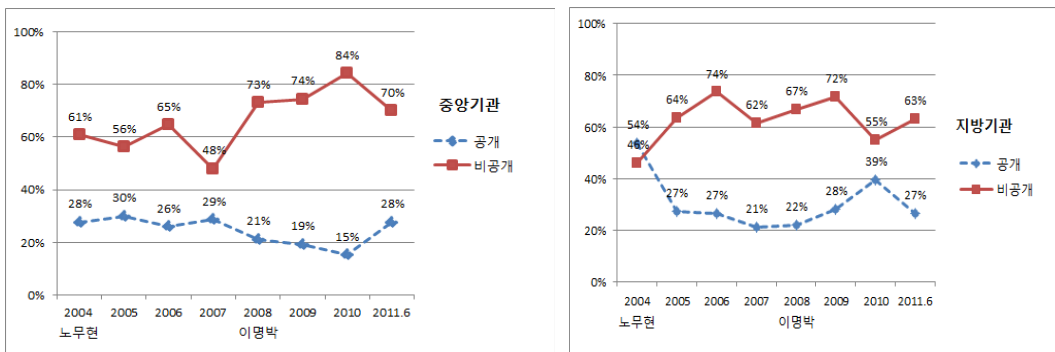
를 <표 11>에서 보면 중앙기관의 경우, 참여정부 때 공개율과 비공개율은 27.4% 대 56.2%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20.1% 대 75.5%로 비공개율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지방기관의 심의회 결과는 정권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2>는 연도별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부에 따른 심의회 결과의 추세를 보았다. 중앙기관은 2008년 이후 공개율과 비공개율은 큰 변화

추세를 보이지만, 지방기관은 중앙기관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지방선거가 2006년, 2010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이후 초반에는 비공개율이 낮아지다가 후반에 갈수록 비공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방기관은 정권의 변화보다는 지방의 정치적 환경인 지방선거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1>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심의회 결과

			심의회 결과			전체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중앙 기관	참여 정부	빈도	93	191	56	340
		%	27.4%	56.2%	16.5%	
	이명박 정부	빈도	130	488	28	646
		%	20.1%	75.5%	4.3%	
전체		빈도	223	679	84	986
		%	22.6%	68.9%	8.5%	
지방 기관	참여 정부	빈도	33	77	11	121
		%	27.3%	63.6%	9.1%	
	이명박 정부	빈도	59	120	11	190
		%	31.1%	63.2%	5.8%	
전체		빈도	92	197	22	311
		%	29.6%	63.3%	7.1%	

중앙기관: $\chi^2 = 55.790$, $df = 2$, $p = .000$, 지방기관: $\chi^2 = 1.499$, $df = 2$, $p = .473$



<그림 2> 중앙·지방기관 간 정부에 따른 연도별 심의회 결과 분포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중앙기관 28개, 지방기관 16개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형태, 위원구성과 심의회 결과 차이, 그리고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간의 심의회 운영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심의회 회의형태를 보면 지방기관이 중앙기관보다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많이 개최되었다. 위원구성 역시 지방기관은 외부위원이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기존 연구에서의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에 가까웠다. 그러나 심의회 결과는 중앙, 지방기관 간 운영상의 차이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지방기관이 1차 공개율이 높아 심의회를 통해 공개로 돌아설 사안이 적거나, 혹은 위원회 회의형태와 위원구성 외에 단체장의 영향력이나 선정 과정 등의 다른 요인이 지방기관의 심의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결과는 전체적으로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공개율은 높고 비공개율은 낮았으나 중앙기관은 그 차이가 현격한데 비해 지방기관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구성에 따른 심의회 결과에서는 지방기관은 외부위원이 많은 심의회가 내부위원이 많은 심의회에 비해 비공개율이 더 낮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치적 환경에 따른 중앙기관의 심의

회 회의형태를 보면, 큰 차이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서면회의가 더 많았다. 지방기관도 중앙기관만큼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서면회의가 더 많아졌다. 중앙기관의 심의회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공개율은 줄고, 비공개율은 높아졌으나, 지방기관은 정권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형태와 위원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기관은 이념이 다른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방기관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이후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와 적용에 있어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함을 보여준다. 회의형태에 따라 심의회 결과가 달라졌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모두 모여 직접 회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급적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앙기관의 심의회의 경우 대면회의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원의 인적 구성에 대해 위원 수로만 분석하였는데 전문성, 독립성 차원에서 어떤 인물이 어떠한 절차로 외부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지방기관 심의회의 환경적 요인 발굴 등 더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회의 운영은 청구인의 알 권리 증진, 해당 공무원과 기관의 전문성 확보, 더 나아가 정보공개제도 발전과 정부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승태 (2005). 미니포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승태 (200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 김정해, 조성한 (2007).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17(2), 173-204.
- 김주환, 성지은 (2005). 정책결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활용 분석: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3), 1-30.
- 김 철 (2003). 정부위원회 제도 정비의 정치경제학: 정부위원회 조직 개혁의 분석과 평가. 서울행정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1-353.
- 김호섭 (2004). 국정과제위원회: 실태, 미지의 성과, 그리고 과제. 한국조직학회보, 1(2), 57-80.
- 박돌봉 (2006).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동서 (1996).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석희, 정진우 (2004).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 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2(4), 163-187.
- 박성민, 김철, 권성욱 (2003). 주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연구: 관악구 교통불편민원실무심의위원회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99-123.
- 박종관, 윤주명 (2004). 지방정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447-467.
- 성도경, 박의상 (200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추진의 영향요인 분석: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2), 281-294.
- 안병철 (2009).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33-160.
- 안성민 (2000).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와 정책결정.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국제포럼 발표논문집(별쇄본), 1-16.
- 안전행정부 (2011). 2010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2012).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안전행정부.
- 우정수 (2009). 기초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이명진, 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121-146.
- 이보람, 이영학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 이승중 (1995).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효과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분석: 청주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 29(4), 1275-1289.
- 이용정 (1999).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재완 (2013).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와 수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임진희, 이준기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 장지원, 문신용 (2004). 행정정보공개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 13(1), 170-202.
- 전영평, 장임숙 (2005).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1), 1-34.
- 정광호, 전대성, 김홍석 (2008). 정보공개제도가 항생제 처방에 미친 영향: 서울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123-150.
- 정홍익, 김호섭 (1991). 기고논문: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행정학보, 25(2), 437-464.
- 조선일 (2004).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3), 139-160.
-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 최무현, 조창현 (2008).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과 정책 효과성: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2), 25-51.
- 최정민 (2013). 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 Benniers, Klaas J. & Swank, Otto H. (2004). On the Composition of Committees.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20(2), 353-378.
- Karty, Kevin D. (2005). Membership Balance, Open Meetings, and Effectiveness in Federal Advisory Committee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4), 414-43.
- Lynn, Frances M. & Busenberg, George J. (1995). Citizen Advisory Committees and Environmental Policy: What We Know, What's Left to Discover. Risk Analysis, 15(2), 147-162.
- Mehra, Achael (1986). Free Flow of Information: A New Paradigm. New York: Greenwood Press.
- Rosen, E. D. (1993). Improv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Concepts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Schneider, Sanudra K. (1987). Influences on State Professional Licensure Poli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6), 479-484.
- Seidman (1998). Politics, Position, and Power: the dynamics of federal organ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 (2011). 정보공개시스템. 검색일자: 2011. 11. 5.
<http://www.open.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Byeong-Chul (2009). A study on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government bureaucracy: A case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16(3), 133-160.
- Ahn, Songmin (2000). Woma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al committees and policy decision. *Specia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16.
- Cho, Seon Il (2004). An empirical study on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civil service commission.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8(3), 139-160.
- Cho, Young Sam (2009).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2, 77-114.
- Choi, Jeong Min (2013). Factors influencing bureaucratic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octor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Jeong Min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73-197.
- Choi, Moo Hyun & Jo, Chang Hyun (2008). The influence of personal traits on the policy effectiveness of government committees: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of representativeness and professionalism.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6(2), 25-51.
- Chung, Hong-Ik & Kim, Ho-Seob (1991).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From the experience of attending committee meetings.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5(2), 437-464.
- Jang, Ji-Won & Moon, Sin-Yong (2004). The empirical analysi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er's relevant factors.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13(1), 170-202.
- Jeon, Yeong-pyong & Jang, Im-suk (2005). The critics about the local governmental committee in Daegu city.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17(1), 1-34.

- Jung, Kwang Ho, Jun, Dae sung, & Kim, Hong Suk (2008). The impact of the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on prescription antibiotics at individual hospitals in Seoul.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6(1), 123-150.
- Kim, Cheol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ing the governmental committee institution.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331-353.
- Kim, Ho-seob (2004).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on national policies: Actual conditions, unknown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1(2), 57-80.
- Kim, Juhwan & Seong, Jieun (2005). The study of committees use in policy: Making of the Cheonggye stream restoration project.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4(3), 1-30.
- Kim, Jung Hai & Jo, Sung-Han (2007). Reform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mittee.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7(2), 173-204.
- Kim, Seung-tae (2005). Mini Forum: The evaluation and solutions for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institution.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Kim, Seung-tae (2006). The analysis of the implement element and policy effec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eoul: 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 Lee Myong-Jin & Moon, Myong-Jae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Korean central agencies. *Journal of KAPA*, 44(1), 121-146.
- Lee, Bo-rama & Lee, Young-hak (2013).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41-91.
- Lee, Jae Yan (2013). A Study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requesting information and granting of requests. Doctor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eung-jong (1995). Local official's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the local ordinance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A case study of Cheongju City.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9(4), 1275-1289.
- Lee, Yong Jung (1999). A study of the decision el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in public agenci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1). White paper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White paper about information

- disclosure.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Park, Dol-bong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local autonomy authority: Focusing on analyz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octor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kuk University.
- Park, Dong Su (1996). The theor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eoul: Bubmons.
- Park, Jong Gwan & Yoon, Ju Myung (2004). An analysis on the recognition and the task of the institution of the opening of government in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Journal of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5(2), 447-467.
- Park, Seok Hee & Jeong, Jin Woo (200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classifying types of them.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2(4), 163-187.
- Park, Sung-min, Kim, Cheol, & Kwon, Sung Wook (2003). A study on the committee as a citizen participation tool. Korean Review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5(3), 99-123.
- Seong, Do Gyeong & Park, Ui Sang (2001). The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Daegu. Journal of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2(2), 281-294.
- Woo, Jung Soo (2009). A study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local governments. Doctor of Philosophy, Injae University.
- Yim, Jin-Hee & Lee, Zoonky (2010). A study on the information providing behavior of public servants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179-225.

